정례반상회 홍보자료

(2022.12월)



인천광역시서구

2022년 12월 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

Ⅰ 관, 단, 과, 소 홍보내용 (11건)

①	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	세무2과
②	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신청 안내	아동행복과
③	검암2지구~경인아라뱃길 지하보행로 추진 중단 안내	도로과
④	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문	도시계획과
⑤	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유의사항 알림	주택과
⑥	검단출장소 거래신고 업무 개시	토지정보과
⑦	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	
⑧	상세주소	
⑨	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안내(2가백신)	보건행정과
⑩	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	건강증진과
⑪	바른 자세 건강 관리사업	

Ⅰ 관, 단, 과, 소

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

☐ 부과 개요

○ 납세의무자: 12. 1.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

○ 납부기간: 22. 12. 16. ~ 23. 01. 02.

○ 제외대상: 2022년 연납 차량 및 6월 일시납 차량(경차 등)

☐ 납부방법

○ 인터넷 납부

-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
-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(http://etax.incheon.go.kr)
- 인터넷지로(http://www.giro.or.kr)

○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: 신용카드로 은행 CD/ATM기에서 지방세 조회·납부

- 타인카드 납부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 번호 입력 후 조회

○ ARS 전화 납부: ☎ 1599-7200 전화하여 지방세 신용카드·계좌 납부

○ 모바일 납부: 스마트폰 앱 「스마트위택스」 다운 받은 후 지방세 조회·납부

○ 고지서 납부: 가상계좌 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

【 부서명 : 세무2과 ☎ 560 - 4230 】

[붙임]

자동차세 납부 안내문



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

납부기간 2022. 12. 16 ~ 2023. 01. 02

납세의무자 2022.12.1.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

※ 제외대상 : 2022년 연납차량 및 6월 일시납차량(경차 등)

납부방법

자동차세(지방세)는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·납부 가능합니다

은행 자동화기기 납부	신용카드로 은행 CD/ATM기에서 지방세 조회·납부 ※ 타인카드 납부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※ 타사카드 이용은 기기이용료 추가, 납부 후 취소 불가
ARS 전화 납부	☎1599-7200 전화하여 지방세 신용카드·계좌 납부 ※ 타인 납부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
인터넷 납부	위택스 (http://www.wetax.go.kr)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(http://etax.incheon.go.kr) 인터넷지로 (http://www.giro.or.kr)
모바일 납부	스마트폰 앱「스마트위택스」다운로드 후 지방세 조회·납부
고지서 납부	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



| 문의처 | 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☎ 032)560-4230

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신청 안내

❖ **2022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.** 본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급식을 지원하여,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이들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되찾아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의미있는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며,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다양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☐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란?

○ 아동급식카드 :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하는 충전식 카드

○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: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음식점

☐ 신청대상 : 서구 관내 음식점

☐ 신청방법

○ 사업장 소재지 **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**

○ 구비서류 : **영업신고증, 사업자등록증, 통장, 신분증 사본**

○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

행정동	연락처	행정동	연락처	행정동	연락처	행정동	연락처
검암경서동	718-3525	가정3동	718-3793	가좌3동	718-5204	마전동	718-5486
연희동	718-3563	신현원창동	718-3844	가좌4동	718-5243	아라동	718-5515
청라1동	718-3604	석남1동	718-3871	검단동	718-5283		
청라2동	718-3652	석남2동	718-3928	불로대곡동	718-5326		
청라3동	718-3684	석남3동	718-3964	원당동	718-5365		
가정1동	718-3723	가좌1동	718-5137	당하동	718-5408		
가정2동	718-3753	가좌2동	718-5165	오류왕길동	718-5444		

☐ 운영방법

○ 일반카드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 (별도 단말기 불필요)

○ 정산일 : 매월 5일, 20일 (월 2회)

- **1일~15일 결제금액 : 당월 20일 정산**
- **16일~말일 결제금액 : 익월 5일 정산**

※ 공휴일 등의 사정으로 정산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【 부서명 : 아동행복과 ☎ 560 - 4424 】

검암2지구~경인아라뱃길 지하보행로 추진 중단 안내

☐ 사업개요

○ 사업위치: 검암2지구~~아라뱃길 남측

○ 사업규모: 길이 185m, 폭원 6m, 높이 3m

○ 사업내용: 지하보행로 설치

○ 총사업비: 8,400백만원

☐ 그 동안 추진사항

○ 2021.07.27. :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착수

○ 2022.03.03. : 시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(도시계획시설 결정 선행 필요)

○ 2022.07.26. : 2022년 제2회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(재검토)

○ 2022.11.02. : 용역 타절준공

☐ 사업추진 중단 사유

○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부적합

-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기 부적합
- 주변 대체도로 활성화 필요
- 사업 추진시 관리적인 측면 우려 등

☐ 종합검토 의견

○ 도로 활성화를 위한 기존 도로 활용, 검암역 공공주택지구사업(IH), 검단~경명로간 도로신설공사(LH) 등과 연계하여 인근 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.

【 부서명 : 도로과 ☎ 560 - 4622 】

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문

❖ 개발제한구역 안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및 법령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임.

☐ 개발제한구역 현황

○ 개발제한구역 지정일: 1972. 8. 25.

○ 개발제한구역 면 적: 14.526㎢ (서구 전체면적의 10.59%)

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

○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○ 공작물의 설치 ○ 토지의 형질변경

○ 죽목의 벌채 ○ 토지의 분할 ○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

○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

※ 개발제한구역에서 상기 제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 시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.

☐ 불법행위 처벌

○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
- 상습적으로 구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

○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
- 구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○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(상한 없음)을 부과합니다.

○ 불법행위가 상습·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(송치)되며,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.

※ 불법행위 신고전화: 서구청 도시계획과(GB관리팀) ☎ 032) 560 - 4682 ~ 4

【 부서명 : 도시계획과 ☎ 560 - 4684 】

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유의사항 알림

☑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?

◆ 노후 ·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◆ 요건

ㅇ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㎡ 미만(공공성 요건 충족 또는 관리지역 내 사업 추진 시 2만 ㎡까지 가능)

ㅇ 노후 ·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/3 이상(관리지역 내에서는 완화 가능)

ㅇ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(단독+ 공동 혼합 포함) 이상

☑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?

◆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

◆ 요건

ㅇ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㎡ 미만

ㅇ 노후 ·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/3 이상

ㅇ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

☑ 사업추진 절차

검인동의서 교부 → 조합설립인가 → 건축심의 →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→ 관리처분계획 수립 →

사업시행인가 → 이주 및 철거 → 착공신고 → 준공 및 입주 → 청산 및 조합 해산

☑ 유의사항

◆ **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조합원 분담금 변경 발생**

ㅇ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ㅇ 조합원 추정부담금은 단순 추정치로 분양가, 종전자산가치 평가, 건축 규모 등의 변경, 사업기간, 각종 계약체결에 따라서 변동되어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◆ **조합설립동의서 제출 후 철회**

ㅇ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후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20호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**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** 철회할 수 있으며,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**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**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◆ **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 시 주민피해 우려**

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된 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으나,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자격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피해는 주민(조합원)이 받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ㅇ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확인은 "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(https://renewal.incheon.go.kr/ires/index.do)"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◆ **사업성 검토 서비스 제공**

ㅇ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(조합)이며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료를 인천도시공사(☎032-260-5326)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(토지등소유자 50% 동의 시 신청 가능)

◆ **조합설립인가 취소**

ㅇ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

- **조합원 과반수 동의**로 조합(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)이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

ㅇ 시장 · 군수 등이 조치를 명하거나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경우

-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**2년 이내에** 건축심의(또는 통합심의)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
-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**3년 이내에**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
-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**1년이 되는 날까지**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
【 부서명 : 주택과 ☎ 560 - 4591~5 】

검단출장소 거래신고 업무 개시

☐ 검단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장소 변경

○ 변경 일자: 2022. 11. 23.(수)

○ 변경 장소: 서구청 토지정보과 → 검단출장소

○ 변경 지역

- 부동산소재지가 **검단지역**인 부동산거래는 **검단출장소**(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)에 신고
- 부동산소재지가 **검단, 청라 외 서구지역**의 부동산거래는 기존대로 **서구청 토지정보과**에 신고

☐ 부동산거래신고 안내

○ 신고 기한: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

○ 제출 서류

- 개인: 실거래 신고서(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)
- 법인: 실거래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

(※ 법인이 주택 매수 시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)

○ 신고 의무자

- 직거래계약: **거래당사자(매도인 및 매수인)**
- 중 개 계 약: **공인중개사**

○ 신고 방법(온라인)

- **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**(http://rtms.molit.go.kr)에 접속 > 서구 선택 > 공인인증서 로그인 > 신고서 입력 > (자금조달계획서 입력 >) 서명
-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, 방문 신고도 가능

○ 위 내용을 위반할 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【 부서명 : 토지정보과 ☎ 560 - 4810 】

【 부서명 : 검단출장소 ☎ 718 - 1831~2 】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

국토교통부 RE3 한국부동산원

주택 전월세 계약 시

"임대차신고 하고 혜택을 받으세요"



임대차신고제란?

신고대상

전국(경기도외 도(都)지역의 군(郡) 제외)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('21.6.1 시행)

*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,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

신고내용

계약당사자 인적사항, 임대목적물 정보, 임대료 ·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

신고방법

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(rtms.molit.go.kr)

▶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,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

혜택

전입신고 시,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(확정일자 부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.)

국민비서 구삐 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안내

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한 임대차 신고,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

가입 방법



1. 국민비서 홈페이지 (www.ips.go.kr)

국민비서 홈페이지 (www.ips.go.kr) 접속 → 알림서비스 → "주택임대차"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

2. 카카오톡(국민비서 채널) 등

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→ 'Ch 국민비서 구삐' 검색 → "주택임대차"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

※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☎ 1533-2949

【 부서명 : 토지정보과 ☎ 560 - 4818 】

상세주소

☐ 상세주소



【 부서명 : 토지정보과 ☎ 560 - 4834 】

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안내(2가백신)

☐ 접종대상 : 18세이상(2차접종 이상 완료자)

☐ 시행시기 : 2022. 11. 7. ~

☐ 접종간격 :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(90일) 이후

☐ 접종방법 : 집에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당일 현장접종

☐ 접종백신 : 2가백신(최근 코로나19 변이주 포함 백신)

※ 반드시 건강상태가 양호한 날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본접종(1,2차)완료자가 동절기접종을 하면 3,4차 접종은 불필요합니다.

【 부서명 : 보건행정과 ☎ 718 - 0455~0457 】

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

☐ 끊겠다는 다짐,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지켜요

새해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 담배 접근 금지!
서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당신의 금연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
○ 대상 :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

○ 운영 : 월~금 (09:00 ~ 18:00) *점심시간 12:00~13:00

○ 장소

- 서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(탁옥로 39) ☎032-718-0524~7
-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(청마로 167번길 19 2층) ☎032-718-0530
-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(길주로 79 6층) ☎032-718-0550
-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(건지로 284번길 60) ☎032-718-0570
-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(완정로 214) ☎032-718-0580

○ 서비스내용

- 금연전문상담사의 1:1 맞춤 상담
- 니코틴의존도 평가 및 니코틴패치(보조제) 제공
- 금연 행동물품 및 홍보물품 제공
- 폐기능, 일산화탄소, 폐활량 검사 실시 (코로나19로 잠정중단)
- 금연 3개월, 6개월 성공자 : 성공기념품 증정

○ 비용 : 무료

【 부서명 : 건강증진과 ☎ 718 - 0523 】

바른 자세 건강 관리사업

☐ 바른 자세 건강 관리사업

○ 대　　상: 지역주민 누구나

○ 추진기간: 상시운영

○ 모집기간: 상시모집

○ 장　　소: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운동상담실

○ 신청방법: 전화 및 방문 예약

○ 추진내용:

- 아동청소년 및 성인 신체 밸런스 관리

· 근골격 불균형 및 자세 검사, 걸음걸이, 족저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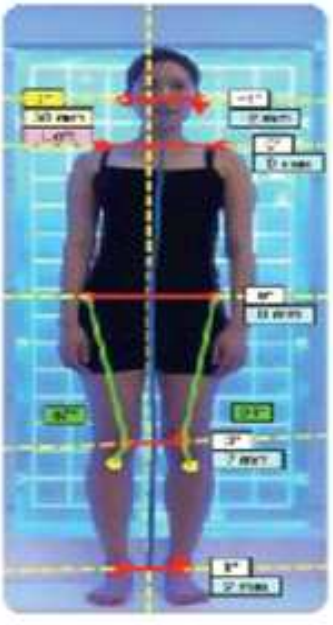
· 체형, 보행 검사 후 맞춤 운동상담

- 어르신 낙상예방 관리

· 신체 평형 검사, 다리 근력 검사를 통한 낙상 위험도 검사

· 검사 후 1:1 개별 맞춤상담 및 낙상예방 운동법 교육







【 부서명 : 건강증진과　☎ 718 - 0580 】